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 3. .
발 의 자 : 서종수 위원 외 5명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2012.09.27 의회규칙 제593호)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시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준용(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

(2)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상임위원장) ① (생략)</p> <p>② <u>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p> <p>③ · ④ (생략)</p>	<p>제6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규칙」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장·부의장의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 9.27.>